

광주지방법원 2022. 2. 9 선고 2021나588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2. 9 선고 2021나58843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1. 5. 11 선고 2020가단51967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태

변론종결 2021. 12. 22.

판결선고 2022. 2. 9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. 5. 11. 선고 2020가단519678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와 E 사이의 2019. 6. 26.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(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다)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영하, 판사 황진희, 판사 박정운